

제적 절차

자녀의 제적 후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본 정보지는 품행검토회의에서 학생의 관계인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지는 학생 및 관계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녀의 제적에 관한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할 일
- 제적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일어나는 일
- 더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제적 이전에 이루지는 사전 조치들을 포함하여 제적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education.vic.gov.au/school/parents/behaviour/Pages/faqs.aspx

자녀가 제적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제적은 학생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로부터 해당 학생을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생을 영구 제적시키는 것은 교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이며 다른 형태의 행동관리 조치를 취한 이후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적만이 적용 가능한 유일한 조치일 정도로 학생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지속적인 안전에 중대하고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되거나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해하는 일부 경우에는 제적이 적절한 대응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적은 다른 학생이나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단 한 번의 짓궂은 장난 등 평소와 다른 성격의 돌발 사건에 대한 조치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자녀의 제적을 결정하기 전에 교장이 고려했을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제적되기 전에, 교장은 반드시:

- 해당 학생이 발언할 기회를 가지도록 해주고
- 해당 학생이나 관련인에 의해 제출된(행동검토회의 (Behaviour Review Conference)를 통한 제출을 포함하여) 정보 혹은 문서를 제적에 관한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며
- 제적의 원인이 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다른 형태의 조치들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제적처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행동이 제적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적은 심각한 문제 행동의 결과입니다. 자녀가학교에 출석 중이거나 등하교 시, 혹은 학교 외부활동 중에 (해당 활동 장소로 오고 가는 이동시간 포함),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음의 행동 중 하나를 행하는 경우:

- 실제로든, 인식 혹은 협박을 통해서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 상당한 재산 손상 혹은 파괴를 초래하는 경우;
-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고의로 가담하는 경우;
- 불법 물질이나 무기를 소유, 사용,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 사용, 판매하도록 고의적으로 돕는 경우;
- 실제로든, 인식 또는 위협을 통해서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원의 명백하고 합리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연령, 모유수유, 성별, 신원, 장애, 산업 활동, 합법적 성활동, 결혼 여부, 부모의 지위, 신체적 특징, 정치적 신념 혹은 활동, 임신, 인종, 종교적 신념 혹은 활동, 성적 취향,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과의 개인적 교제 (인척관계로든 다른 관계로든 상관없이) 등에 기반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깎아 내리거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 다른 학생의 복지, 안전, 혹은 교육기회를 방해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의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유지할 필요성과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비교해 볼 때 제적만이 유일한 조치로 간주될 정도로 자녀의 행동이 심각한 수준인 경우

모든 학교는 학생참여정책 (Student Engagement Policy)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참여, 공손한 품행, 출석 등의 영역에서 학교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대사항을 명시하고 각 학생의 상황에 대해 학교의 대응방침을 정하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모는 *학생참여정책의* 사본을 학교에 요청하시거나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학교 내에서 요구되는 행동기준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participation/Pages/engagepol.aspx

제적 조치가 이미 취해진 경우라도, 제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려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실 경우, 본 정보지 끝 부분에 기재된 가까운 본 기관 지역사무소 지역사회연락관 (Community Liaison Officer) 혹은 기타 지원서비스 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부모에게 어떤 문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교장은 행동검토회의를 완료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부모 및 자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장이 자녀를 제적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모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게 됩니다.

- 제적 통지서 (Notice of Expulsion).
- 제적 재고요청 양식 (Expulsion Appeal Form) 사본.
- 본 정보지.

제적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되나요?

의무재학연령의 학생인 경우, 교장은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자녀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다른 정식 학교에 등록되거나, 공인 교육훈련 기관에 등록되거나, 취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계획은 행동검토회의에서 논의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재학연령이 아닌 학생의 경우, 교장은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학교, 공인교육훈련기관 및 고용 알선기관에 관한 정보를 부모 및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를 새로운 교육 혹은 교육훈련 환경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이 지연될 경우, 학교는 이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자녀가 완수할 의미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제적에 대해 재고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제적을 규정하는 *장관령 625 (Ministerial Order 625)* 은 제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자녀의 관점을 고려하고 자녀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한, 부모도 자녀를 대신하여 재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 요청은 다음에 근거하여 접수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제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적처분을 내린 근거가 불공정한 경우
- 과거에도 해당 학생의 품행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개입 및 전략이 부족했던 경우,
- 다른 참작할 만한 상황.

부모가 자녀의 제적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을 때, 재고 요청 양식도 제공받게 됩니다. 재고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양식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로 보내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본 양식이 수령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적 재고 요청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제적 재고 요청 양식이 학교에 접수되면, 본 기관의 지역사무소로 전달되어 추가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역 감독관은 접수된 재고 요청을 고려하여 자녀를 제적시키는 결정을 유지할지 아니면 번복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고 요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지역 감독관은 자녀의 특정한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제적감사단 (ERP)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RP가 지정된 경우, ERP의 역할은:

- 부모 및 자녀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 지역 감독관이 자녀의 제적 결정을 유지 또는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의 징계 조치 (Disciplinary Measures) 항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participation/Pages/studengage.aspx

재고 요청이 제출된 경우,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자녀의 학교는 행동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전환계획을 계속 이행하게 됩니다. 행동검토회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education.vic.gov.au/school/parents/behaviour/ Pages/faqs.aspx

의무재학연령의 학생인 경우, 여기에는 다른 교육, 훈련, 혹은 취업과 관련된 기회가 마련될 때까지, 혹은 제적 재고 요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둘중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기준), 학교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과제를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의무재학연령이 아닌 학생의 경우, 교장은 자녀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학교, 공인 훈련기관 및 취업 알선기관에 대한 정보를 귀하 및 자녀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행되고 있는 조치 혹은 자녀에게 제공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자녀의 학교 교장 혹은 지역 사무소와 추가로 의논하셔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제적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구두로 통보받게 됩니다.

지역 감독관이 자녀를 제적시키는 교장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교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무재학연령의 학생인 경우

- 학생이 다른 학교, 공인교육훈련기관, 혹은 취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돕는 행동계획을 계속 이행합니다
- 다른 학교, 공인교육훈련기관, 혹은 취업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를 계속 제공합니다.

의무재학연령이 지난 학생의 경우

교장은 학생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학교, 공인교육훈련기관 혹은 취업에 관한 정보를 학생 및 관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감독관이 귀하의 자녀를 제적시키겠다는 교장의 결정을 번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교장은 가능한 빨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해당 학생은 학교에 재등록되어야 합니다
- 교장은 학생, 관련인 및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생을 위한 학교 복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적기록은 학생의 학적부 및 CASES21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 학생 및 관련인은 제적기록이 학생의 학적부에서 삭제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더 자세한 정보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적 이행 시 교장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학생* 참여 및 포용에 대한 지침서 (Student Engagement and Inclusion Guidance)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education.vic.gov.au/school/principals/participation/Pages/studengage.aspx

정학 및 제적과 관련된 학부모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education.vic.gov.au/school/parents/behaviour/ Pages/fags.aspx

일단 부모는 인근 지역사무소의 지역사회연락관 (Community Liaison Officer)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아래 참조).

교육및조기아동발달청 지역 사무소

빅토리아주 북동 지역

이메일: nevr@edumail.vic.gov.au

Benalla

우편: PO Box 403, Benalla, Victoria 3672 위치: 150 Bridge Street East, Benalla,

Victoria 3672

전화: (03) 5761 2100 팩스: (03) 5762 5039

Glen Waverley

위치: Level 3, 295 Springvale Road,

Glen Waverley 3150, Victoria

전화: (03) 9265 2400 팩스: (03) 9265 2444

빅토리아주 북서 지역

이메일: nwvr@edumail.vic.gov.au

Bendigo

우편: PO Box 442, Bendigo, Victoria 3552

위치: 7-15 McLaren Street, Bendigo,

Victoria 3550

전화: (03) 5440 3111 팩스: (03) 5442 5321

Coburg

우편: Locked Bag 2001, Coburg, VIC 3058

위치: Level 2, 189 Urquhart Street,

Coburg, VIC 3058

전화: (03) 9488 9488 팩스: (03) 9488 9400

빅토리아주 남동 지역

이메일: sevr@edumail.vic.gov.au

Dandenong

우편: PO Box 5, Dandenong 3175

위치: 165-169 Thomas Street, Dandenong 3175

전화: (03) 8765 5600 팩스: (03) 8765 5666

Moe

우편: PO Box 381, Moe, Victoria 3825 위치: Corner Kirk and Haigh Streets,

Moe, Victoria 3825

전화: (03) 5127 0400 팩스: (03) 5126 1933

빅토리아주 남서 지역

이메일: swvr@edumail.vic.gov.au

Ballarat

위치: 109 Armstrong Street North, Ballarat, 3350

전화: (03) 5337 8444 팩스: (03) 5333 2135

West Footscray

위치: Level 3, Whitten Oval, 417 Barkly Street,

West Footscray, 3012

(유리 미닫이 문을 통해 입장)

전화: (03) 9291 6500 팩스: (03) 9291 6565

Geelong

우편: PO Box 2086, Geelong, Victoria 3220

위치: 5A Little Ryrie Street, Geelong, Victoria 3220

전화: (03) 5225 1000 팩스: (03) 5225 1099

추가 지원서비스

빅토리아주 학부모 전화안내 (Parentline Victoria)

전화: 13 22 89 - 일 주 7일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Parentline은는 신생아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빅토리아주 전역에 걸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빅토리아주 학부모회 (Parents Victoria)

전화: (03) 9380 2158 or 1800 032 023 (시골 지역 통화자만)

웹사이트: www.parentsvictoria.asn.au

빅토리아주 원주민 교육협회 (Victorian Aboriginal Education Association Inc.)

전화: (03) 9416 3833 웹사이트: <u>www.vaeai.org.au</u>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전화: 1300 767 299

웹사이트: www.health.vic.gov.au/mentalhealth/services/child/

아동 보호 협회 (Children's Protection Society)

전화: (03) 9450 0900 웹사이트: www.cps.org.au

호주 아동 재단 (Australian Childhood Foundation)

전화: (03) 9874 3922

웹사이트: www.childhood.org.au/website/default.asp

빅토리아주 학교 위원회 협회 (Association of School Councils in Victoria)

전화: (03) 9808 2499

웹사이트: www.asciv.org.au/ASCIV/Welcome.html

빅토리아주 학교 기관 위원회 (Victorian Council of School Organisations)

전화: (03) 9429 5900 웹사이트: www.viccso.org.au/

빅토리아주 다문화 위원회 (Victorian Multicultural Commission)

전화: (03) 9208 3184

웹사이트: www.multicultural.vic.gov.au/